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공업 1332-	(전화번호 75-7649)	실 결 규 정 2 조 항 제1부시장 전 결 사 항
차 리 기 간		제 1 부 시 장	
시 행 일 자	공고제 6 호		
보 존 년 한			제1부시장

보조기관	산업국장		협조	법무과장(공고 안심사)
	공업과장			시민과장
	중소기업계장			문시관 1 계장
기 안 책 임 자	유 태 봉	75, 1, 8.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신		동
제 목	75년도 영세기업 육성자금 집행요령 공고			

제 1 안 내 부 결 재

1. 상공부 고시 제 10496호 (74,2,4)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운용 요강 제 13조 및 기업 1332-2049 (74,12,24) 에 의거 75년도 당시 영세기업 육성 자금 집행요령을 별첨 공고와 같이 공고 시행코저 합니다.

공고안심사	1976.1.11	제 5 호
심사자 지	법제계장	법무관
	전 결	

제 2 안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975년도 서울특별시 영세기업 육성자금 집행요령 공고

상공부 고시 제 10496호 (74,2,4)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요강" 제13조 및 기업 1332-2049호 (74,12,24) 에 의거 1975년도 서울특별시 영세기업 육성자금 집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75. 1. .

서 울 특 별 시 장

0201-1-8A (갑)
1969. 11. 10 승 인

190mm×268mm (특급인쇄용지 40g/m²)
소 달 청 (1,000,000매 인 쇄)

다 음

" 별첨 공고안 이기 시행

제 3안

수신 상공부장관

참조 기업과장

제목 동 건

1. 당시 75년도 영세기업 육성자금 집행요령을 별첨과 같이 공고하였기 상공부 고시 제 10496호 (74,2,4)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요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보고 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부. 끝.

제 4안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산업과장

제목 동 건

1. 상공부 고시 제 10496호 (74,2,4)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요강 제13조 및동기업 1332-2049호 (74,12,24) 에 의거 당시 75년도 영세기업 육성자금 집행요령을 별첨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영세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추천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부. 끝.

수신처 : 서청 1-11, 서출 1-4.

건열
1975. 1. 15

제 5안

수신 국민은행장

참조 영업부장

제목 동 건

1. 상공부 고시 제10496호 (74,2,4)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요강 제13조 및 기업 1332-2049호 (74,12,24) 에 의거 75년도 서울특별시 영세기업 육성 지원 자금 집행 요령을 별첨과 같이 공고 하였으니 업무 수행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부. 끝.

제6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동 건

1. 1975년도 서울특별시 영세기업 육성자금 지원자금 집행요령을 별첨과 같이 공고 하였기 송부 하오니, 귀산하 해당 조합원 들에게 주지 시키시어 많은 신청이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부. 끝.

수신처 : 서울특별시 14개 협동조합이사장.

제7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 공업과장

제목 시보 게재 의뢰

1. 당시 공고 제 호를 송부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부. 끝.

0301-1-43A (2-2) 서울특별시 190㎜×268㎜ 인쇄용지(2급) 60g/㎡
1972. 12. 29. 승인 소년기술원 (92-0436)

공 고

서울통계과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1975년도 서울특별시 영세기업육성지원자금 집행요령공고

상공부고시 제 10498호 (74.12.24)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요강" 제13조 및 동기업 1332-2049호 (74. 12. 24.) 에 의거 1975년도 서울특별시 영세기업 육성지원자금 집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75. 1. .

서 울 특 별 시 장

1975년도 서울특별시 영세기업 육성지원자금 집행요령

서울특별시

1. 목 적

본 요령은 상공부 고시 제 1044.5호 (74.2.4) 에 의하여 75년도 서울특별시 영세기업 육성지원자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75년도 융자재원

75년도 배정액 97,000 천원 (운전자금 : 67,000천원 시설자금 ; 30,000 천원)

3. 융자대상 업종 및 지원순위

제조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영세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순위는 가~라로 한다.

가. 생활필수품 생산업체

나. 수출품 생산업체

다. 하청업 또는 중소기업과 계열화 업체

라. 기 타

~1~

4. 융자대상 업체의 자격

가. 상시 종업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체로서 제3항 (융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업체.

나. 특히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제3항에 해당하는 상시 종업원 9인 이하의 영세기업체 (단, 상시 종업원 5인 이상 업체는 관계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라야 함)

5. 구청(소)별 융자추천 한도의 배정

시장은 제2항의 융자재정 심의위에서 각 구청(소)별 영세기업체 수에 의하여 추천할 자금의 한도액을 각 구청(소)장에게 사전 배정한다.

(별표 1호)

6. 융자조건

가. 용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1108

라. 융자 기간 (1) 시설자금 : 1년거치 4년 균등 분
할 상환

(2) 운전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
할 상환

마. 이 율 (1) 시설자금 : 연 10%

(2) 운전자금 : 연 15.5%

바. 업체별 융자 한도액

(1) 시설자금 : 500만원 까지
(기대출잔액 포함)

(2) 운전자금 : 300만원 까지
(기대출잔액 포함)

7. 융자대상업체 추천 및 융자절차

가. 구청(소)장은 75.2.20까지 관내 전 업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수요 희망업체를 조
사 하여야 한다.

나. 구청(소)장은 전 "가"호에 의거 조사된 수출

희망업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융자추천원을 제출받아 전 제5항의 융자추천 한도액을 근거로 하여 다음 요령에 의거 융자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75.3.1 까지 과할 주민은행 본지점장에게 추천 통보하여야 하며 주민은행 본지점장은 구청(소)장이 추천한 업체중에서 융자업체와 융자금액을 결정 배분한다. 추천한 업체중 융자 불가능 또는 그 업체가 발생한 때에는 대체선정하여 추천한다.

(1) 시설자금 : 배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융자한도액을 업체별로 배정 추천한다.

(2) 운전자금 : 배정된 한도액의 그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별표로 추천한다.

4. 구청(소)장은 전 각호에 의거 융자대상 업체를

신청 추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피산업체에게 통보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라. 제2호에 의거 추천을 받은 피상업체는 추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개월 이내에 국민은행 본 지점장에게 융자신청과 융자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국민은행 본 지점장은 추천된 업체에 피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피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추천 구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소)장은 매 익월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 및 피를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보고 하여야 한다.

바. 국민은행 본 지점장은 융자추천을 받은 피상업체가 7개월 이내에 피를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융자 수속을 이행
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에도 불구하고
융자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융
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신청인과 추천 구청
(소) 장에게 통보한다.

8. 융자 대상 업체의 추천 취소

구청(소)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동 취소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

가. 국민은행 는 지점장이 기 추천 업체에 대한 융자
불능 통보가 있을 때.

나. 추천된 업체로부터 수혜를 포기 하였을 때.

9. 구청(소) 별 융자 추천 한도의 재조정

시장은 전 7항 "가", "나" 호에 의거 융자 대상
업체의 추천 실적이 [illegible] 부진 하거나 기히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할 자금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정된 한도액을 재조정하여 타 구로 재 배정 할 수 있다.

10. 기 타

각 구청(소장) 및 국민은행 본 지점장은 본 집행 요령을 널리 주지시켜 영세기업 육성 시책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 33호 (74. 2. 22)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자금배정표

단위: 천원

구청(소)별	배정액			비고
	시 원자금	융자자금	계	
종로	1.000	3.000	4.000	
중구	5.000	11.000	16.000	
동대문	2.000	3.000	5.000	
성동	3.000	8.000	11.000	
성북	1.000	3.000	4.000	
도봉	1.000	2.000	3.000	
서대문	2.000	5.000	7.000	
마포	2.000	4.000	6.000	
용산	3.000	6.000	9.000	
영등포	6.000	14.000	20.000	
관악	1.000	3.000	4.000	
서초	1.000	1.000	2.000	
은평	1.000	1.000	2.000	
양천	1.000	2.000	3.000	
강동		1.000	1.000	
계	30.000	67.000	97.000	

검열 1975. 1. 9 [illegible]

(별지제2호)

영세기업자금융자추천신청서					처리기간
					2 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업체명			⑤ 대표자		
⑥ 사업장 소재지			⑦ 주요생산품명		
⑧ 수출품명			⑨ 제열화 업체명		
⑩ 종업원수	상시종업원 명 임시종업원 명		월간생산능력	⑪ 수량	⑫ 금액
					원
⑬ 융자추천 구분	시설자금 원 운전자금 원	⑭ 추천액	원	⑮ 자산총액	원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세기업자로서 상공부고시 제 10496호(74.2.4)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요강에 의한 영세기업자금을 융자받고자 융자추천의뢰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귀하 신청인 (인)

위와 같이 추천함

19 년 월 일

귀하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통	없음

2710-01-92 B. 1974.12.2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8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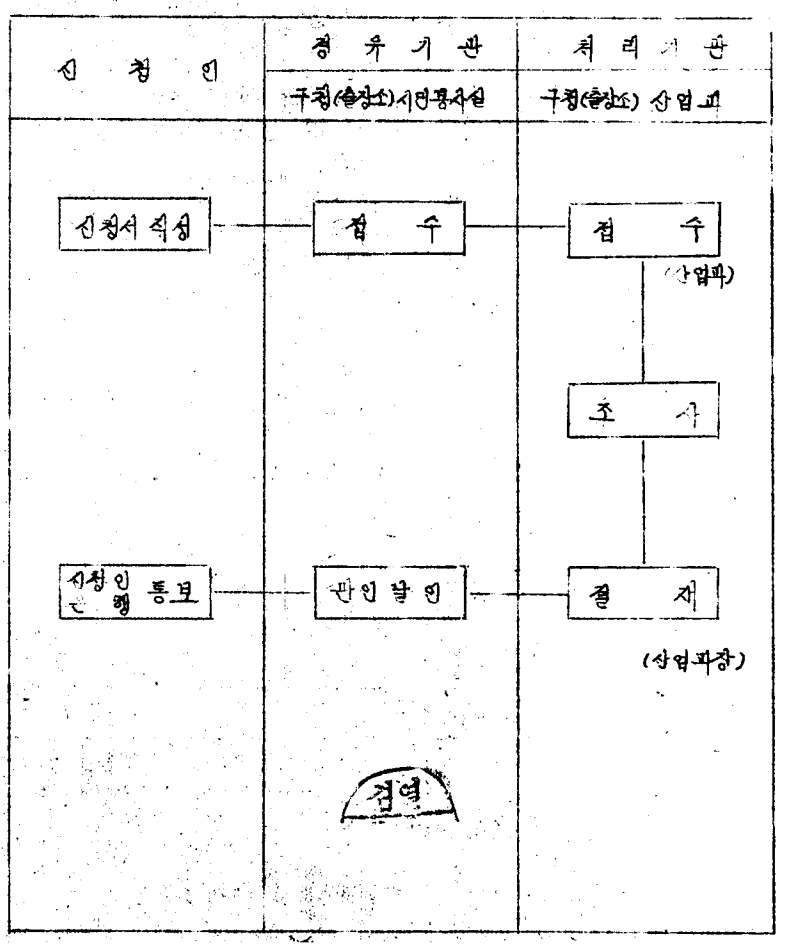

사업계획서

1. 자금조달계획

(단위: 천원)

조달방법 / 구분	총소요액	조달계획					산출근거
		자기자금				융자신청액	
		증자	차입금	기타	계		
시설자금							
운전자금 (회전자금에 한함)							
계							

※ 여백이 부족할시는 별지첨부

2. 시설현황 및 증설계획

가. 기존시설

(단위: 천원)

시설명	용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소유자	비고

※ 공장등록년월일 : 19 년 월 일

나. 증설시설계획

(단위: 천원)

시설명	용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3. 생산및 판매계획

(단위: 천원)

품명	규격	단위	생산능력		1994년도						1995년도					
					생산		판매				생산		판매			
							국내판매		국외판매(수출)				국내판매		국외판매(수출)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4. 차입금 내용

(단위: 천원)

차입은행	대출명목	차입금	상환액	잔액	상환기간	비고
국민은행						
다 해						
계						

5. 담보물

(단위: 천원)

구분	소재지	건물또는구조	면적	소유자	명가		기설정액	
					단가	금액	순위	설정액

6. 기타 참고사항

19 년 월

신청인주소
귀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제3호.

영세기업자금 융자추천상황보고

자금 19 .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생산품명	상용인원	추천액	추천은행	비고

~~ⓐ

별지제 14호

영세기업자금 대출상황보고

자금 19 . . . 현재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융자 추천일자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은행